

『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8월 19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원회의 인원수를 정비하고
- 나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’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정비함 (안 제1조)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’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- 다.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함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(금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5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.

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
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분쟁조정법」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
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”위원회“라
한다)”로,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·제9조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·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“9인”을 “15인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
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31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1조에 따라”로, “제36조

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자 1인이상이”를 “사람 1명 이상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·제9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</u>	<u>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환경분쟁조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환경분쟁조정법</u> 」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관할) <u>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할한다. 다만,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사무를 제외한다.</u> 1. (생략) 2. <u>기타</u> 분쟁조정사무	제2조(관할) <u>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그 밖에</u> -----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중 상임위원은 1인을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③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명 -----15명 ----- -----명----- ----- ② ----- -----에 따라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5조(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) ① 조정위원회(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재정위원회(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 ② 조정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되 다만,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. ③ 재정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하되 다만,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 ④ (생략)	제5조(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제31조에 따라 ----- -----제36조에 따라 ----- ----- ② -----명----- ----- -----명----- ----- ③ -----명----- ----- -----명----- ----- -----사람 1명 이상이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수료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8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에 따른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·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·보상금·감정료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9조(수당 등) ----- -----에 따른 ----- ----- ----- 그 밖에 ----- -----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환경분쟁조정법 ○ 제4조(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 ○ 제7조(위원회의 구성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환경분쟁조정법]

제4조(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중앙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각각 설치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등)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